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22 선고 2021가합53749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3나203122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22 선고 2021가합537499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

담당변호사 이재경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다담

담당변호사 김수경

변론종결 2023. 5. 25.

판결선고 2023. 6. 22.

주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22,415,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의 고모이다.

나. 피고는 2015. 7. 9.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(이하 '이 사건 음식점'이라 한다) 사업자등록을 마쳤다.

다.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의 E은행 (계좌번호 1 생략) 계좌(이하 '제1계좌'라 한다) 및 E은행 (계좌번호 2 생략) 계좌(이하 '제2계좌'라 하고, 제1계좌와 합하여 이하 '이 사건 각 계좌'라 한다)가 사용되었다.

라. 이 사건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가 2017. 7. 19. 설립되었다. 피고와 주식회사 D는 2017. 8. 11. 피고가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장치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(이하 '이 사건 양도계약'이라 한다)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.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(이 사건 음식점)에 설치된 시설장치와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D가 인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평가)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시설장치의 평가는 2017. 7. 31. 현재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고, 영업권 평가는 상속세법에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한다.

제5조(양도양수대금의 지급) 주식회사 D는 위의 각 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시설장치 양도대금: 81,128,310원(부가세 별도)을 2018. 2. 11. 및 2018. 8. 11. 각 50%씩 지불한다.

2. 영업권 양도대금: 229,499,490원(부가세 별도)을 2018. 8. 11.부터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한다.

마. 주식회사 D는 2017. 9. 25.부터 2020. 1. 16.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합계 322,415,676원을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5 내지 7호증, 을 제3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, 이 사건 음식점을 법인인 주식회사 D로 전환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장치 및 영업권 일체를 342,190,589원(= 현금 500,000원 + 영업권 252,449,448원 + 고정자산매각 89,241,141원)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후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각 계좌로 양도대금 322,415,676원을 지급하였다.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소유자이자 운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보유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2,415,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관련 법리

민법 제741조는 ‘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’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

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).

다.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

1) 위 기초사실, 갑 제5 내지 7, 9 내지 12, 15, 19, 20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주식회사 E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가 2015. 4.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업 준비를 주도하였던 점, ② 이 사건 음식점을 법인인 주식회사 D로 전환하면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 중 90%를 보유하고, 피고는 나머지 10%만 보유하였던 점, ③ 주식회사 D의 설립 당시 임원이 대표이사 피고, 사내이사 원고, 감사 F였으나 그 후 대표이사 F, 사내이사 원고로 변경되었고, 피고는 현재 주식회사 D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개업하였고, 이 사건 양도계약 또한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인은 피고이므로,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,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대여관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.

2)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주식회사 D가 2017. 9. 25.부터 2020. 1. 16.까지 사이에 아래 표 ‘입금액’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22,415,676원(이하 ‘이 사건 입금액’이라 한다, 원고는 순번 27이 7,000,000원이라고 주장하나 6,000,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)을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이 사건 음식점 거래처 원장에 ‘B(피고) 500,000원, 영업권 252,449,448원1), 고정자산매각(시설장치) 89,241,141원2)’으로 기재되어 있고,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에서 ‘시설장치 양도대금 81,128,310원(부가세 별도)을 2018. 2. 11. 및 2018. 8. 11. 각 50%씩

지불하고, 영업권 양도대금 229,499,490원(부가세 별도)을 2018. 8. 11.부터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한다'고 정하였는바,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과 전혀 맞지 않는다.

② 이 사건 입금액은 679,706원부터 32,000,000원까지의 돈을 분할하여 송금한 것이다. 그중 아래 표 순번 6의 2,000,000원, 순번 19의 10,000,000원, 순번 21의 16,000,000원, 순번 27의 6,000,000원(그중 3,000,000원)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. 순번 1의 32,000,000원, 순번 11의 17,000,000원, 순번 16의 30,000,000원은 그 지출시기 및 지출내역에 비추어 원고의 세금 납부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고, 순번 5의 2,000,000원(원고의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), 순번 26의 5,000,000원(그중 3,878,860원 한국자산관리공사), 순번 30의 5,000,000원 및 순번 33의 6,000,000원(그중 각 800,000원 원고의 딸 과외비 지급), 순번 31의 1,000,000원(그중 752,250원 원고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)은 그 지출시기 및 지출내역에 비추어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출하기 위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. 나머지 돈 또한 대부분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카드대금 납부, 보험료 납부, 일본인 직원 급여 지급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명목으로 지출되었는바, 그 지출시기 및 지출내역에다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,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지급받았다거나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생활비 등을 대신 지출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순번	입금일자	입금액(원)	지출내역	계좌
1	2017. 9. 25.	32,000,000	2017. 9. 25. 15:23 32,000,000원 입금 2017. 9. 25. 16:11 현금 10,000,000원 입금 2017. 9. 25. 16:14 부가가치세 41,695,010원 지급	1
2	2017. 10. 25.	5,000,000		1
3	2017. 11. 9.	735,970	2017. 11. 9. 15:27 5,000,000원 입금 2017. 11. 9. 15:27 B(피고)(퇴직연금-개인형IRP) 2,950,000원	1
4	2017. 11. 27.	20,000,000	2017. 11. 27. 15:54 입금 2017. 11. 27. 15:56 17,000,000원 지급(대체) 2017. 12. 1. G카드 3,036,921원 지급	1
5	2017. 12. 4.	2,000,000	2017. 12. 4. 14:12 2,000,000원 입금 2017. 12. 4. 14:15 H(원고의 가사도우미) 타행송금 2,000,000원 지급	2
6	2017. 12. 11.	2,000,000	2017. 12. 11. 15:22 2,000,000원 입금 2017. 12. 11. 15:25 A(원고) 2,000,000원 지급	2
7	2017. 12. 19.	10,000,000	2017. 12. 19. 14:21 5,000,000원 입금 2017. 12. 19. 14:32 1,000,000원 입금 2017. 12. 19. 14:34 외국통화 환전 6,498,732원 지급 2017. 12. 19. 15:33 4,000,000원 입금	2

순번	입금일자	입금액(원)	지출내역	계좌
			2017. 12. 19. 15:34 I 4,000,000원 지급	
8	2017. 12. 27.	13,000,000	2017. 12. 27. 16:08 10,000,000원 입금 2017. 12. 27. 16:17 J, K, L, M 지급 2017. 12. 27. 16:25 3,000,000원 입금 2017. 12. 27. 16:27 F 600만원 지급 2017. 12. 27. 16:28 B(피고) 200만원 지급	1
9	2018. 1. 5.	10,000,000	2018. 1. 5. 14:43 10,000,000원 입금 2018. 1. 5. 14:46 N 5,274,950원 지급 2018. 1. 5. 14:56 G카드 568,074원 지급 2018. 1. 5. 15:05 O, P 등 지급 2018. 1. 5. 20:56 Q 2,466,423원 지급	1
10	2018. 1. 22.	10,000,000	2018. 1. 22. 16:07 입금 2018. 1. 22. 06:10 B(피고) 200만원 2018. 1. 22. 16:10 F 200만원 2018. 1. 22. O, P 등 지급	1
11	2018. 1. 23.	17,000,000	2018. 3. 6. 14:45 17,000,000원 입금 2018. 3. 6. 14:52 16,865,000원 종합소득세 지급	1
12	2018. 3. 6.	10,000,000	2018. 3. 6. 16:57 10,000,000원 입금 2018. 3. 6. 16:58 2,997,633원 R 지급	1
13	2018. 3. 30.	10,000,000	2018. 3. 30. 15:30 10,000,000원 입금 2018. 3. 30. 15:32 S 800,000원 지급	2
14	2018. 5. 4.	3,000,000	2018. 5. 4. 11:05 3,000,000원 입금 2018. 5. 4. 11:10 2,799,577원 G카드 지급	1
15	2018. 5. 13.	10,000,000	2018. 5. 13. 23:03 10,000,000원 입금 2018. 5. 13. 23:04 B(피고) 5,000,000원 지급	1
16	2018. 5. 30.	30,000,000	2018. 5. 30. 15:35 30,000,000원 입금 2018. 5. 30. 16:03 종합소득세 16,683,370원 지급 2018. 5. 30. 16:05 B(피고)종합소득 2,513,350원 지급 2018. 5. 30. 16:07 지방세A(원고)지방 580,840원 지급 2018. 5. 30. 16:09 지방세지방소득 5,054,830원 지급	1
17	2018. 7. 2.	15,000,000	2018. 7. 2. 14:11 15,000,000원 입금 2018. 7. 2. 14:35 건강보험고용 680,290원 지급 2018. 7. 2. 14:35 건강보험산재 544,830원 지급	1

순번	입금일자	입금액(원)	지출내역	계좌
			2018. 7. 2. 14:59 G카드 6,569,489원 지급 2018. 7. 2. 15:05 정기적금(18291012536121) 4,000,000원 지급	
18	2018. 8. 7.	5,000,000	2018. 8. 7. 15:12 5,000,000원 입금 2018. 8. 7. 15:13 G카드 1,751,917원 지급	1
19	2018. 9. 17.	10,000,000	2018. 9. 17. 13:42 10,000,000원 입금 2018. 9. 17. 13:56 A(원고) 10,000,000원 지급	1
20	2018. 10. 1.	5,000,000	2018. 10. 1. 18:00 5,000,000원 입금 2018. 10. 1. 18:01 F 2,000,000원 지급 2018. 10. 1. 18:41 G카드 1,709,805원 지급	1
21	2018. 10. 16.	16,000,000	2018. 10. 16. 00:37 입금 2018. 10. 16. 00:40 A(원고) 20,000,000원 지급	1
22	2018. 10. 18.	5,000,000	2018. 10. 18. 11:28 5,000,000원 입금 2018. 10. 18. 11:29 B(피고) 2,000,000원 지급 2018. 10. 22. 07:49 O, P 등 지급	1
23	2018. 11. 8.	10,000,000	2018. 11. 8. 00:22 10,000,000원 입금 2018. 11. 8. 00:24 B(피고) 1,000,000원 지급 2018. 11. 8. 03:54 G카드 794,931원 지급 2018. 11. 8. 15:07 정기적금(18291012536121) 4,000,000원 지급	1
24	2018. 11. 30.	10,000,000	2018. 11. 30. 20:51 10,000,000원 입금 2018. 12. 3. 04:21 G카드 7,341,207원 지급	1
25	2018. 12. 17.	6,000,000	2018. 12. 17. 16:08 6,000,000원 입금 2018. 12. 17. 18:30 정기적금(18291012536121) 4,000,000원 지급 2018. 12. 19. 13:15 T 1,116,000원	1
26	2018. 12. 21.	5,000,000	2018. 12. 21. 16:20 5,000,000원 입금 2018. 12. 21. 16:23 한국자산관리공사 3,878,860원 지급	1
27	2019. 1. 7.	6,000,000	2019. 1. 7. 16:55 6,000,000원 입금 2019. 1. 7. 18:18 G카드 1,342,811원 지급 2019. 1. 7. 18:28 A(원고) 3,000,000원 지급 2019. 1. 7. 18:50 O 등 지급	1
28	2019. 1. 30.	5,000,000	2019. 1. 30. 21:02 5,000,000원 지급 2019. 1. 30. 21:05 F 2,000,000원 지급 2019. 2. 1. 04:16 G카드 2,032,558원 지급	1
29	2019. 2. 6.	5,000,000	2019. 2. 6. 00:58 5,000,000원 지급	1

순번	입금일자	입금액(원)	지출내역	계좌
			2019. 2. 7. 05:15 정기적금 4,000,000원 지급	
30	2019. 3. 13.	5,000,000	2019. 3. 13. 18:45 5,000,000원 지급 2019. 3. 13. 18:47 U(원고의 딸 과외교사) 800,000원	2
31	2019. 4. 2.	1,000,000	2019. 4. 2. 16:47 1,000,000원 입금 2019. 4. 2. 16:49 V회사 A(원고) 752,250원 지급 2019. 4. 2. 18:14 G카드 247,750원 지급	1
32	2019. 4. 12.	5,000,000	2019. 4. 12. 18:01 5,000,000원 입금 2019. 4. 12. 18:02 B 2,000,000원 지급	1
33	2019. 6. 25.	6,000,000	2019. 6. 25. 17:47 6,000,000원 입금 2019. 6. 25. 17:48 U(원고의 딸 과외교사) 800,000원	2
34	2019. 6. 27.	3,000,000	2019. 6. 27. 10:12 3,000,000원 입금 2019. 6. 27. 11:35 B(피고) 17,000,000원 입금 2019. 6. 27. 11:37 W 24,000,000원 지급	2
35	2019. 7. 8.	5,000,000	2019. 7. 8. 18:36 X 100,000원 입금 2019. 7. 8. 18:44 F 2,000,000원 지급 2019. 7. 8. 18:44 B(피고) 2,900,000원 지급	1
36	2019. 7. 12.	2,000,000	2019. 7. 12. 20:20 2,000,000원 입금 2019. 7. 12. 20:22 B(피고) 200,000원 지급 2019. 7. 12. 21:22 Y충전 975,040원 지급	1
37	2019. 9. 6.	3,000,000	2019. 9. 6. 10:02 3,000,000원 입금 2019. 9. 6. 10:09 G카드 3,000,000원 지급	1
38	2019. 9. 9.	679,706	2019. 9. 9. 10:53 679,706원 입금 2019. 9. 9. 11:06 G카드 679,706원 지급	1
39	2019. 10. 2.	1,000,000		2
40	2020. 1. 3.	2,000,000		2
41	2020. 1. 16.	1,000,000	2020. 1. 16. 12:26 1,000,000원 입금 2020. 1. 16. 12:26 환전지갑신청 1,056,920원 지급	1

③ 한편 원고는 2021. 7. 12. 피고에게 ‘D를 오픈하면서 대표이사로 명의를 만들어 줬더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시설비 명목으로 3억 4천을 뽑았다’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,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이 사건 입금액을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

취지로도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D의 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을 횡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(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), 그 돈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에게 반환되어야 할 뿐이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허준서, 판사 김승현, 판사 전승환

$$1) = 229,499,490\text{원} \times 1.1$$

$$2) = 81,128,310\text{원} \times 1.1$$